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가합58661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기술신용보증기금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 론 종결 2015. 3. 6.

판결 선고 2015. 4. 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918,390원 및 위 금원 중171,354,237원에 대한 2013. 11. 21.부터 2014. 12. 5.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0. 16. 접수 제1005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6.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5. 피고 D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 10. 16. 접수 제1005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7. 피고 D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 10. 16. 접수 제1005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8.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9.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주채무자)와 피고 B(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B과 피고 D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안이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전제 사실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가) 피고 회사는 2009. 6. 10. 원고와 보증원금 1억 9,000만 원, 보증기한 2010. 6. 10.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원금은 1억7,000만 원, 보증기한은 2014. 6. 5.로 변경되었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물(2012. 12. 1. 이후 연 12%)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2)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및 채권회수 등

피고 회사는 2013. 9. 1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1. 21. 중소기업은행에 172,800,752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위 대위변제금 중 1,446,515원을 회수하였으며, 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으로 475원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지출하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2,563,678원이다.

3) 등기관계

가)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아버지인 피고 C의 명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0. 16. 접수 제100554호로 2014. 2.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B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동생인 피고 D의 명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0. 16. 접수 제100555호로 2014. 10.6.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의 명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0. 16. 접수 제100556호로 2014. 10. 6.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쟁점

1) 피고 B의 담보제공(근저당권설정)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성(쟁점 1) 2) 피고 B의 매도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성(쟁점 2)

다.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제3항의 판단에서 보듯이 피고 B와 피고 C, D 사이 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별지 목록의 항목 순번에 따라 '제○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내지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3. 11. 21. 원고의 대위변제로 신용보증계약상의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이미 성립되었으므로,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 B의 무자력

갑 제12 내지 2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근저당권설정 내지 매매 당시 피고 B이 보유한 적극재산의 가액은 491,415,300원[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등 참조), 피고 B 소유의 인천 연수구 E아파트 111동 804호에 는 가액 214,000,000원을 초과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416,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적극재산의 산정에서 제외한다]인 반면 소극재산은 567,442,004원으로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구체적인 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재산	가액 (원)
적극재산	제1토지	81,483,700
	제2토지	136,737,900
	제3토지	29,519,100
	제4토지	60,812,500
	제5토지	60,812,500
	제6토지	81,073,800
	제7토지	40,536,900
	안산시 단원구 F 토지	438,900
합계		491,415,300
소극재산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173,918,390
	신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142,597,000
	피고 C에 대한 구상금채무	186,325,614
	인천신용보증재단 또는 피고 D에 대한 구상금채무 (피고 D이 2014. 1. 17. 일부를 대위변제함)	58,800,000
	삼성카드 카드론 채무	5,801,000
합계		567,442,004

3) 쟁점 1[피고 B의 담보제공(근저당권설정)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성]

가)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2014. 2. 11. 한국씨티은행 신포지점에 피고 회사와 피고 B의 채무 186,325,61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 B은 그 담보조로 제1, 2, 3토지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 B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제1, 2, 3토지를 피고 C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4) 쟁점 2(피고 B의 매도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성)

가) 피고 D의 주장

피고 D은 2014. 1. 17. 인천신용보증재단에 피고 회사 및 피고 B의 채무 중 37,753,36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 B은 그 대위변제금액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제4 내지 7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

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5211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 B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 D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대물변제로 제4 내지 7토지를 양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도 추정된다.

5)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고 B과 피고 D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제1,2, 3토지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제4 내지 7토지에 관한 피고 D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3.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

위 2.가.1)2)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B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73,918,390원(= 잔존 대위변제금 171,354,237원 + 확정 지연손해금 475원 + 법적절차비용 2,563,678원) 및 위 금원 중간존 대위변제금 171,354,23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11. 21.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4. 12. 5.까지는 약정상의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규현, 판사 이해정, 판사 장민하